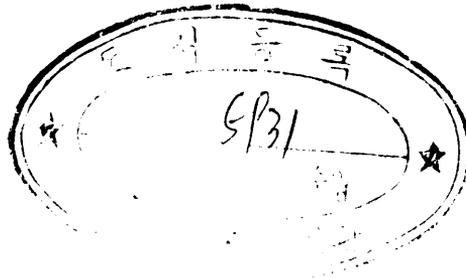


375.94
72437

碩士學位 論文

企業年金原價의 測定과 公示에 관한 研究



濟州大學校 大學院

經營學科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姜 萬 淳

1990年 12月

企業年金原價의 測定과 公示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高富彦

姜 萬 淳

이 論文을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姜萬淳의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委 員
委 員

李 相 奉
高 富 彦
姜 萬 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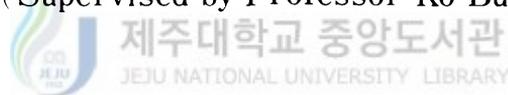
濟州大學校 大學院

1990年 12月

A STUDY ON THE MEASUREMENT AND DISCLOSURE FOR THE COST OF PENSION PLANS

Kang Man - soon

(Supervised by Professor Ko Bu-Eeo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目 次

I. 序 論	1
1. 研究目的	1
2. 研究方法和 範圍	3
II. 企業年金會計에 對한 理論的 背景	5
1. 企業年金的 本質	5
2. 企業年金制度的 類型	7
3. 企業年金會計理論의 發展過程	9
III. 年金原價의 測定과 公示	17
1. 保險數理的 假定과 基金積立方式	17
2. 年金原價의 測定과 配分	22
3. 年金資産과 負債의 認識·測定	30
4. 年金會計情報의 公示	34
IV. 우리나라 退職金 會計上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45
1. 退職金 會計上의 問題點	47
2. 改善方向	49
V. 要約 및 結論	52
參 考 文 獻	54
英 文 抄 錄	57

表 目 次

< 表 Ⅱ - 1 > APB Opinion NO.8과 SFAS NO.87의 比較	15
< 表 Ⅲ - 1 > 過去勤務原價의 償却	27
< 表 Ⅲ - 2 > 未認識 純損失의 償却額	30
< 表 Ⅲ - 3 > 最小負債와 追加負債	34
< 表 Ⅳ - 1 > 國民年金制度의 給與內容	46



I . 序 論

1. 研究의 目的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로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이 점차 연장되어 고령화 사회로 이행되어 가고있다.¹⁾ 이로 인하여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기업에 근무하다 퇴직하는 종업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 사회 문제 중의 하나이다. 종업원의 퇴직 후의 생활 보장책으로는 개인의 저축, 기업에 의한 퇴직금 및 연금, 정부에 의한 공적 연금 제도 등이 있으나 개인의 저축에는 한계가 있으며, 공적 연금 제도 등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기본적인 생계 유지 수단에 불과한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종업원의 노후 생활에 관심을 갖고 이에 대처하는 것은 현대 산업 사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기업의 당연한 의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 기업에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勤勞基準法에 의한 퇴직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 제도는 노후 장기적 보장의 연금 급여 형태가 아닌 퇴직 일시금 제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소득 보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퇴직시의 보수와 근무 년수를 기초로 하여 퇴직금을

1)

(단위 : 천명)

區分 \ 年度	1970	1986	2000	2023
全 人 口 (A)	31,435	41,569	48,017	52,574
60세 이상 人 口 (B)	1,705	2,824	4,780	10,260
B / A (%)	5.4	6.8	10.0	19.5

資料 : 國民年金管理公團; 「國民年金案內」, 1987, p. 5.

산정하기 때문에 ① 종업원의 장기 근속으로 평균 임금이 상승하여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② 누적 퇴직금의 사외 적립이 아닌 社內積立으로 이를 運轉資金으로 轉用하고 있는 실정이고, ③ 기업들 중에는 누적 퇴직금이 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²⁾ 이와같이 기업 연륜의 높아짐에 따른 근로자의 고령화, 근속 년수의 장기화로 기업의 퇴직금 지급액의 증가는 기업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때로는 기업의 倒産, 閉鎖時 퇴직금 지급 보장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퇴직금 문제의 해결책으로 기업의 퇴직금 부담을 평준화시키고, 종업원의 受給權을 보장하며 나아가 안정된 고용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퇴직금의 연금화나 연금 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하다.³⁾

오래전 부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기업이 종업원의 퇴직 후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기업 연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연금 제도에의 가입자 수와 금부액 및 연금 기금 자산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財務狀態 및 經營成果와 관련하여 연금 평가의 중요성이 증대되었고 연금의 회계적 측면이 보다



2) 朴成洙, 「韓國 企業退職金の 年金化方案에 관한 研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5. pp.56-60.

자본금에 대한 누적 퇴직금별 기업분포 (단위 : %)

누적퇴직금/자본금	기업분포	근로자분포	평균비율	평균기업연령(년)
10% 미만	20.0	9.4	3.34	12.14
10 - 20	17.0	18.9	12.06	13.88
20 - 30	13.7	11.3	24.93	15.32
30 - 40	8.8	12.2	35.75	16.83
40 - 50	7.5	7.8	42.67	16.91
50 - 60	6.2	9.7	54.19	15.78
60 - 70	4.8	5.6	64.39	15.55
70 - 80	3.3	3.4	74.86	18.37
80 - 90	2.6	2.4	84.03	17.08
90 - 100	1.7	3.0	92.11	19.04
100% 이상	14.4	16.3	159.96	16.88
계	100	100	18.55	15.16

資料: 朴宰用 外; 「退職金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韓國開發研究院, 1984, p.62

3) 上掲論文, p.200.

강조되고 있다.⁴⁾

이 論文은 기업 연금 제도가 조속히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年金會計에 관한 내용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현대 年金會計의 특징을 나타내는 미국의 연금 회계 기준을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현행 우리 나라 退職給與充當金の 會計處理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향후 기업 연금 제도를 도입, 실시하는 경우 年金情報에 대한 적정한 회계 처리를 위한 하나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그 目的이 있다.

2. 研究方法과 範圍

이 論文의 연구 방법은 주로 年金會計에 관한 보고서와 문헌 자료를 이용한 문헌 연구를 통하여 規範的 會計理論의 견지에서 年金會計의 이론적 체계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現在 우리 나라에서는 기업 연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實證的 調査分析대신에 미국의 財務會計基準審議會(FASB)報告書 第87號 “使用者 年金會計”⁵⁾를 중심으로 문헌 자료를 이용하여 이론적 구조와 회계 처리 방법 및 연금 회계 정보의 공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연구의 범위는 私的年金制度 중 기업이 퇴직 종업원에게 연금 지급을 위해

4) Donald E. Kieso, Jerry J. Weygant, *Intermediate Accounting*, 5th ed. , (John Wiley & Sons, 1986), p.200.

미국의 경우;

연도\구분	연금수혜자(명)	급부액(억\$)	연금자산(억\$)
1975년	2,770만	160	2,110
1995년	4,450만	1,060	2조 5천

5) FASB,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87, "Employer' Accounting for Pensions", (FASB, 1985)

社外에 年金基金을 적립하는 年金基金制度(funded plan), 非離出式年金制度(non-contributory plan), 確定給付型 年金制度(defined benefit plan)에 한정하여 사용자의 입장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체를 5장으로 구성하여 제1장은 서론 부분으로 연구 목적, 연구 방법 및 범위를 제시하고, 제2장에서는 企業年金會計의 理論的 背景을 다루었으며, 제3장에서는 企業年金原價의 측정과 公示 그리고 제4장에서는 現行 우리나라의 退職金會計上의 問題點과 改善方向에 관하여 살펴보았으며, 끝으로 제5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II. 企業年金會計의 理論的 背景

이 장에서는 기업 연금 회계의 토대가 되는 기업 연금의 본질을 규명하고, 연금 제도의 유형과 기업 연금 회계가 가장 발달된 미국의 기업 연금 회계 기준의 발전 과정을 살펴봄으로서 앞으로 전개할 기업 연금 회계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1. 企業年金의 本質

연금 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연금은 사용자나 정부에 대한 충성심의 보상 또는 恩典으로 여겼으나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年金을 정기적인 退職 所得給付로 정의된다.⁶⁾ 연금 제도는 퇴직 종업원에게 규칙적으로 소득 급부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자, 노동 조합 또는 정부에 의해 채택된 제도이다. 종업원들은 노령, 사망, 장애 등에 의해 퇴직하게 되는 데 일반적으로 年金이라 하면 노령에 의한 退職給付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企業年金이란 종업원의 퇴직을 원인으로 하여 퇴직 급부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給與를 의미한다.

企業年金의 本質에 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⁷⁾

(가) 功勞報償說

功勞報償說은 종업원이 장기간 충실하게 근무해준 데 대한 대가로 사용자가 배려해 주는 것이 연금이라는 견해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특권이므로

6) The Encyclopedia Americana, Vol.21, (Americana Corporation, 1976), p. 544.

7) 申建浩; “退職金制度의 改善方向에 관한 研究”, 産業研究, 第8集, 1983, pp. 111~133.

종업원은 연금 제도에 대하여 財産權을 갖지 못하며 기업은 基金을 따로 積立할 필요가 없게 된다. 기업주의 일방적 溫情思想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날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나) 生活保障說

生活保障說에 의하면 연금이란 종업원의 퇴직 후의 생활 보장 수단이라는 견해로, 노후의 생활 보장이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公的年金의 설명에 이용되어 진다.

(다) 賃金後拂說(移延賃金說)

현재의 임금은 노동력의 가치 이하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미지급된 임금을 종업원이 퇴직한 후 분할 지급함으로써 기업이 지급할 부채를 청산하는 것이라는 견해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기업 연금의 본질에 대한 견해는 純粹理論的側面에서 살펴 본 것으로 모두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지니나 그 중 오늘날 연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賃金後拂說이며, 현재 우리 나라의 퇴직금도 이 견해를 따르고 있다.⁸⁾ 임금 후불설은 연금 회계에 관한 최초의 보고서인 ARB NO.36⁹⁾ 이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견해이다.

SFAS NO.87에서는 交換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年金을 설명하고 있다. 즉, 종업원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사용자는 현재의 임금과 기타 급여외에 일정액의 퇴직 소득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므로 企業年金은 恩給이 아니라 支給이 移延된 賃金의 일부라는 것이다.¹⁰⁾ 따라서 사용자의 종업원에 대한 의무는 종업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발생한다.

8) 우리 나라의 大法院에서 退職金은 社會保障的 性格과 功勞報償的 性格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勤勞基準法上 雇用主와 勤勞者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勤勞의 對價인 賃金의 性格을 띤 것이라는 判決(1969년 12월 30일)이 있었고, 使用者가 勤勞者에게 지급하는 退職金은 用役 提供에 대한 未支給 賃金이 축적된 것이 그 財源이 된 것으로 본질적으로 後拂賃金의 인 성질을 가진다 라고 判決(1975년 7월 22일)하였다. (1980년 12월 25일자 每日經濟新聞 참조)

9) AICPA, Accounting Research Bulletins NO.36, "Pension Plans - Accounting for Annuity Cost Based on Past Service", (AICPA, 1948).

10) FASB, SFAS NO.87, op. cit. ,par.79.

2. 企業年金制度의 類型

기업 연금 제도란 퇴직 종업원이나 장애 종업원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기업 또는 기타 조직체가 채택하는 방법이다. 기업 연금 제도의 일반적 유형은 다음과 같다.¹¹⁾

1) 契約 基準에 따른 分類

(1) 拂入確定型 年金制度

拂入確定型 年金制度에서는 사용자의 불입금이 연금 제도의 규정에 의해 확정되는 제도로, 사용자는 일정 공식에 의해 매기 일정 금액을 불입 적립한다. 이 금액은 종업원의 연령, 근무 기간, 이익, 보수 수준과 같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이 제도에서는 年金資産으로부터의 收益에 따른 效益과 損失에 따른 危險은 종업원에게 귀속되며, 사용자의 책임은 공식에 의해 확정된 불입금을 매년 불입함으로써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따라서 매기 불입된 금액은 當期の 純年金原價로 보고된다.¹²⁾ 그러므로 필요한 唯一한 公示는 수혜 대상 종업원 집단, 불입금 결정 기준, 매기 비교 가능한 중요한 사건의 본질과 효과를 포함하는 年金制度의 내용과 當期에 認識된 年金原價額이다.¹³⁾

(2) 確定給付型 年金制度

確定給付型 年金制度는 일반적으로 연령, 근무 년수, 보수 수준 등과 같은 요소의 함수로 퇴직시 지급될 年金給付額이 확정되는 제도이다.¹⁴⁾ 퇴직시 지급될

11) 具致讓; “企業年金會計에 관한 研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8, p.11.

12) FASB, SFAS NO.87, op. cit. , par.64.

13) Ibid., par.65.

14) Ibid., par.11.

급부액은 근무 년수, 생존 기간, 퇴직 직전의 보수 수준 등을 포함하는 연금 급부 공식에서 구체화된 미래의 사건에 의해 결정된다. 이 제도에서는 퇴직 시점에서 발생할 年金給付債務에 대처하기 위하여 현재 얼마의 금액이 필요한가를 결정해야 하며, 확정된 급부를 지급하기에 충분한 基金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급될 給付額은 미래의 불확실한 변수에 의해 결정되므로 약정된 급부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시 이용 가능한 충분한 基金이 적립될 수 있도록 적절한 基金積立方法이 마련되어야 한다.

2) 報告 實體에 따른 分類

(1) 使用者 會計

使用者 會計란 企業年金制度를 시행하는 기업 또는 사용자의 회계를 의미한다. 使用者 會計에서는 年金基金 資産과 종업원에 대한 연금 지급 의무에 관한 궁극적인 책임과 위험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가정하는 것으로 연금과 관련된 정보를 財務諸表에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주로 다룬다.

(2) 年金制度 會計

年金制度 會計는 사용자로부터 불입금을 받아 年金基金을 관리하며 종업원에게 年金을 지급하는 實體의 會計를 의미한다. 年金制度 會計에서는 年金制度가 독자적으로 年金基金資産을 관리하고 수탁 책임에 대한 會計報告를 한다고 가정하므로 年金制度 自體의 財務狀態, 經營成果, 財務狀態變動表에 관한 報告를 해야한다. 즉 年金制度 會計에서의 주된 지향점은 年金基金資産運營人의 年金基金資産에 대한 수탁 관리 상태와 책임을 측정, 보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基金設定方法에 따른 分類

(1) 基金制度(Funded Plan)

이 제도는 기업이 年金基金資産을 기업 외부에 적립하여 특정한 지급일에 퇴직 종업원에게 年金을 지급하는 제도로, 미래의 年金給與를 위해 책임있는 基金積立機關에 기금을 따로 적립한다.

(2) 非基金制度(Unfunded Plan)

이 제도에서는 年金基金을 기업 내부에 유보시켜 기업이 퇴직 종업원에게 직접

年金給與를 지급한다.

4) 拂入金의 分擔與否에 따른 分類

(1) 釀出制度(Contributory Plan)

사용자와 함께 종업원도 年金原價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불입금의 일부를 부담한다.

(2) 非釀出制度(Noncontributory Plan)

이 제도에서는 사용자가 年金原價의 전부를 부담하고 종업원은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3. 企業年金會計理論(企業年金會計基準)의 發展 過程

기업 연금 제도의 정착은 퇴직 연금 제도의 정착에 따른 것인 바,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기업의 퇴직 연금을 기업 회계에 어떻게 계상하고 공시할 것인가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연구 검토해왔다. 여기서는 기업 연금 회계가 가장 발달된 미국의 기업 회계 기준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발전 과정과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1) ARB NO.36

ARB NO.36은 후에 ARB NO.43에서 명문화된 것으로, 최초의 年金會計基準인 ARB NO.36이 발표되기 이전에는 年金費用을 연금 기금에의 불입액과 동일시 하는 現金基準만이 사용되었다.

ARB NO.36의 주된 내용은 未積立累積給付를 財務諸表에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즉, 기업 연금 제도 시행 이전의 過去勤務原價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ARB NO.36에서는 對應 概念을 이용, 財務諸表에 未積立累積給付를 인식토록 하면서 현재와 미래의 기간에 걸쳐 배분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이러한 對應 概念은 ARB NO.36이래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개념이다. 또한 ARB NO.36은

기업이 연금 기금에의 불입액을 비용화하고 현금 불입액이 未積立累積給付의 일부가 포함된다면 現金主義 會計는 바람직한 것이라 하면서 現金主義를 고수하는 입장이다. 결국 ARB NO.36은 年金基金에 적립되지 않은 累積給付에 대한 비용을 I/S에 표시하는 방법을 제한하고 있다.

2) ARB NO.47¹⁵⁾

ARB NO.47의 주된 내용은 年金負債를 B/S에 표시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로 ARB NO.47에서 年金負債라는 개념이 최초로 사용되었다. ARB NO.47은 未積立受給給付를 B/S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I/S에도 회계 기간중의 最小年金費用으로 未積立受給給付의 증가를 보고하도록 하여 收益費用 對應의 原則에 충실하도록 했다.

3) APB Opinion NO.8¹⁶⁾

APB Opinion NO.8은 企業年金會計 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최초의 규정으로 연금 회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 기준에서는 연금 비용은 연금 불입액과 관계없이 수용 가능한 保險數理的 基金積立方法을 사용하여 계산하도록 한다. 즉, APB Opinion NO.8은 단순한 現金主義에서 보다 복잡한 發生主義에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APB Opinion NO.8에서의 주된 관심은 保險數理的 基金積立方法을 적용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간에 年金費用에 대한 인식을 일치하도록 하는 데 있다. 發生主義를 요구하는 이유는 미래 年金給付의 측정 가능한 부분은 기금에 얼마나 적립되었느냐와는 관계없이 각각의 근무 기간에 누적되어야 하는 전제에 의한다.

APB Opinion NO.8에서는 보험 수리적 기금 적립 방법에 의해 산정되는 연금 비용은 매년 큰 차이가 생기므로 사용자가 매년 인식할 수 있는 연금 비용에 제한을 두기위하여 매기의 年金費用의 最小値와 最大値 概念을 도입, 사용한다. 매기

15) AICPA, ARB NO.47, "Accounting for Costs of Pension Plans", (AICPA,1956).

16) AICPA, Accounting Principles Board Opinion NO.8, "Accounting for the Cost of Pension Plans", (AICPA, 1966).

의 연금 비용의 최소액은 ① 正常原價 ② 未積立累積給付 殘額에 대한 年間利子 ③ 未積立受給給付의 5%감소분의 합계액보다 커야 한다. 매기 연금 비용의 최대 금액은 ① 正常原價 ② 年金制度 開始時 未積立累積給付額의 10% ③ 過去勤務原價를 인정하는 경우 未積立累積給付額의 10% ④ 未積立 年金發生殘額의 年間利子の 합계액을 초과해서는 않는다.

最小,最大法은 年金費用을 결정하기 위한 규칙이 아니라 年金費用을 保險數理的으로 계산하기 위한 지침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APB Opinion NO.8의 구조는 연금 비용을 借記하고 연금 비용에 대한 연금 부채를 貸記하며, 기금이 적립되면 借記하고 현금을 貸記한다. 年金費用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적립하였으면 그 차액은 移延資産(deferred charge)으로 B/S에 표시되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移延負債(deferred credit)로 표시된다.

APB Opinion NO.8은 收益費用 對應의 原則과 費用測定의 原則을 충실히 따르는 것으로 保險數理的 方法에 기초한 發生主義 요구는 종업원의 잔여 근무 기간에 걸쳐 연금 비용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4) FASB Interpretation NO.3¹⁷⁾

FASB Interpretation NO.3은 ERISA¹⁸⁾의 규정에 대한 응답으로 발표된 것으로 APB Opinion NO.8을 재확인하고, ERISA가 연금이 종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금 부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다. 즉, 부채의 발생은 연금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보상받는 최종 급부가 年金基金資産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ERISA는 PBGC¹⁹⁾에 의해 보상된 未積立受給給付를 적립할 의무가 있으며, 그러한

17) FASB, FASB Interpretation NO.3, "Accounting for the Cost of Pension Plans Subject to ERISA of 1974", (FASB, 1974).

18) 1974년에 미국에서 제정된 從業員 退職所得 保障을 위한 法律. the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for 1974.

19) ERISA에 의해 설립된 年金給付의 支給을 保證해주는 機關. the 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

의무는 연금 제도의 종료와는 관계없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5) SFAS NO.35²⁰⁾

SFAS NO.35는 연금 제도를 하나의 報告實體로 규정하는 年金資產과 年金負債의 보고와 측정에 관한 會計基準이다. 이는 기업과는 분리되고 구분되는 새로운 실체로서의 연금 제도에 관한 회계와 報告基準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획기적 기준이라 할 수 있다.

SFAS NO.35에서는 자산은 현재 시장 가치로 측정되며 연금 부채는 累積給付로 정의하고 미래의 보수 수준을 고려함이 없이 發生給付基金積立方法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그리고 사용자의 채무를 보고하기 보다는 연금 제도의 연금 채무를 보고하는 방법으로 연금 채무를 보고한다. 이러한 부채 문제에 대한 간접적인 방법은 사용자 財務諸表의 註釋情報로 보고되는 연금 제도의 채무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SFAS NO.36에도 이어지고 있다.

6) SFAS NO.36²¹⁾



SFAS NO.36은 APB Opinion NO.8의 보충 공시 요구를 수정한 것으로 중요한 사항은 SFAS NO.35에 의해 측정된 累積給付를 공시하는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年金制度의 基本的 事項에 관한 說明
- ② 基金積立 政策에 관한 報告書
- ③ 期間間 比較可能性에 影響을 미치는 중요한 事件 예를 들면 會計方法의 變更, 保險數理的 假定 또는 基金積立方法의 變更, 年金制度의 變更, 保險數理的 利得과 損失 등
- ④ SFAS NO.35 아래서 市場價値로 測定된 年金資產

20) FASB, SFAS NO.35, "Accounting and Reporting by Defined Benefit Pension Plans", (FASB, 1980).

21) FASB, SFAS NO.36, "Disclosure of Pension Information", (FASB, 1980).

⑤ SFAS NO.35아래서 測定된 것으로 受給과 非受給發生給付로 分離된 保險數理的으로 計算된 累積給付額

⑥ 保險數理的 計算에 사용되는 利率率(割引率)

⑦ 保險數理的 計算日

7) SFAS NO.87

매년의 年金費用의 계산에 다양한 측정 방법을 허용하고, 중요한 자산과 부채가 B/S에 누락되는 등 APB Opinion NO.8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으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FASB는 年金費用 계산에 收益-費用法 대신에 資産-負債法을 적용하는 보다 논리적이고 타당한 年金會計基準을 만들려고 노력한 결과 1982년 豫備的 見解(preliminary views)를 발표하였고, 1985년 3월에 公開草案(exposure draft)을 발표하였으며, 동년 12월에 企業年金會計에 대한 새로운 會計基準인 SFAS NO.87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된다.

8) SFAS NO.88²²⁾



1985년 12월에 공표된 SFAS NO.88은 給付確定型 年金制度의 解除(settlements), 短縮(curtailments), 終了給付(termination benefits)에 대한 使用者 會計를 다룬 새로운 회계 기준으로 超過年金基金資産을 인출함으로서 발생하는 이득을 계산하는 방법과 그 이득을 인식하는 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기업 연금에 發生主義를 적용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특징은 ① 어떤 事件에 대한 認識의 遲延 ② 純原價의 報告 ③ 資産과 負債의 相計이다.²³⁾ 이 3가지 특징은 명확히 설명되지도 널리 이해되지도 않았고 다른 분야에서 적용되

22) FASB, SFAS NO.88, "Employers' Accounting for Settlements and Curtailments of Defined Benefit Pension Plans for Termination Benefit", (FASB, 1985).

23) FASB, SFAS NO.87, op. cit., summary.

는 會計原則과 상충되기도 하나 이들은 수년 동안 미국 등에서 年金에 대한 財務報告의 특징을 대변해왔다.

첫째, 認識을 遲延시킨다는 것은 연금 제도의 변경 결과를 포함하는 年金債務의 변화와 그러한 채무를 충당하기 위하여 유보시켜둔 자산 가치의 변동을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즉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 기간에 걸쳐 체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모든 변화는 차기 이후의 변화에 의해 相計되어지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궁극적으로 모두 인식되어지나 일정 시점에서 인식되고 측정된 변화는 차기 이후에 純原價의 구성 요소와 부채, 자산으로 인식되기를 기다린다.

둘째, 純原價의 특징은 연금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과 거래의 인식 결과는 사용자의 財務諸表에 단일의 純額으로 보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용자의 다른 분야의 활동과는 분리하여 보고해야 할 적어도 다음 3가지 항목 즉, ① 약정된 금부의 報償原價 ② 그러한 금부의 移延支給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 원가 ③ 年金基金資産을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투자 수익을 통합하여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相計의 특징은 연금 제도에 적용된 자산의 가치와 과거에 年金原價로 인식된 年金負債는 비록 그 부채가 청산되지 않았고 자산이 여전히 통제되어지며, 그러한 금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보상이 사용자에게 의해 명백히 부담되어진다 할지라도 사용자의 B/S에 純額으로 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FASB NO.87은 이상의 3가지 특징의 범위내에서 다음의 3가지 변화를 통한 보다 유용한 財務報告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가) 純期間年金原價를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표준화된 방법을 요구한다. 이는 종업원의 추정 근무 기간에 걸쳐 종업원의 연금에 대한 보상 원가를 인식하고 원가를 연금 제도의 조건에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시킴으로서 比較可能性과 理解可能性을 높이기 위함이다. FASB NO.87에서 주장하는 年金原價의 측정 방법은 給付/勤務年數法이다.

(나) 負債의 認識이 純期間年金原價를 증가시켜 차감 금액의 인식을 계속 지연시킨다 할지라도 累積給付債務가 연금 자산의 公正價値를 초과하는 경우 負債(追加負債)를 즉시 인식토록한다.

(다) 現在의 財務諸表에 구체화된 것 보다 완전하고 현행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의 확대 공시를 요구한다.

이상에서 미국의 기업 연금 회계 기준의 발전 과정과 그 특징들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APB Opinion NO.8 과 SFAS NO.87간의 차이로 이를 비교하면 <表 II-1>과 같다.²⁴⁾

< 表 II-1 > APB Opinion NO.8 과 SFAS NO.87의 비교

주요 사항	APB Opinion NO.8	SFAS NO.87
1. 회계 기간에 인식 할 연금 원가		
① 원가 배분 방법 (근무 원가 계산에 사용하는 방법)	① 발생급부 원가법 ② 예정급부 원가법 * 정상가입연령방법 * 개별수준프리엄법 * 정상목표연령방법 * 총계법	급부/근무 연수방법
② 과거 근무 원가의 인식 및 상각 방법	* 발생 후에 인식 * 최저 한도액과 최고 한도 액을 규정; 최고 한도액은 발생 원가의 10% * 종업원의 잔여 근무 기간에 배분	* 발생 후에 인식 * 종업원의 잔여 근 무기간에 배분하는 방법과 정액 상각 방법
③ 보험수리적 손익의 인식 * 미인식 이득과 손실 의 상각 방법, 기간	* 발생 이후의 기간에 인식, 공시 불필요 * 배분법과 산술 평균법 * 10 ~ 20년	* 발생 이후의 기간 에 인식, 공시 필요 * corridor approach * 종업원의 평균잔여 근무기간에 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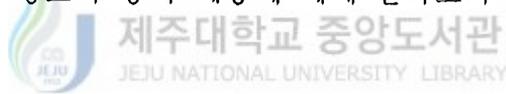
24) 金然洙; “企業年金制度 導入時의 會計와 稅務와 관한 研究”, 木浦大學論文集, 第29輯, 木浦大學校, 1989, p.185.

<p>④ 보험수리적 가정치의 선택</p>	<p>* 명기하지 않음</p>	<p>* 이자율-채무를 청산하는데 효과적인 이자율 * 연금자산 수익률-장기 예상 수익률</p>
<p>2. 연금 부채와 자산의 인식</p> <p>① 과거근무원가의 미적립액의 부채 인식</p> <p>② 선급연금원가에 대한 자산 인식</p> <p>③ 추가부채의 인식</p> <p>④ 추가부채가 필요한 경우의 기타 항목 인식</p>	<p>* 필요 없음</p> <p>* 필요 있음</p> <p>* 미지급연금원가를 초과한 법적 채무(실제는 드물다.)</p> <p>* 이연자산</p>	<p>* 필요 있음</p> <p>* 필요 있음</p> <p>* 연금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한 누적채무</p> <p>*미상각과거근무원가의 범위내에서는 무형연금자산, 범위초과시는 주주지분에 대한 차감계정</p>



Ⅲ . 年 金 原 價 의 測 定 과 公 示

企業年金制度를 도입, 실시하는 경우 발생하는 회계적 문제는 ① 매기의 연금 원가를 측정, 배분하는 문제 ② 연금 제도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의 측정, 보고 문제 ③ 연금 제도에 관한 정보의 공시 문제로 집약된다.²⁵⁾ 연금 원가를 측정하는 것은 기업 연금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연금 비용과 연금 부채의 산정은 물론 기간 손익도 연금 원가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연금 원가의 정확한 산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먼저 연금 회계의 전제가 되는 보험 수리적 가정과 기금 적립 방식을 살펴 보고 원가 측정 및 연금 자산과 부채의 인식과 측정 그리고 연금 회계 정보의 공시 내용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1. 保 險 數 理 的 假 定 과 基 金 積 立 方 式

1) 保 險 數 理 的 假 定

年金給付는 종업원의 근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수의 일부로, 確定給付型年金制度에서는 사용자가 종업원의 퇴직 후에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그러나 퇴직 후에 지급되는 연금 급부액은 연금 공식에서 구체화된 많은 미래의 사건 즉, 종업원의 생존 기간, 근무 년수, 퇴직 직전의 보수 등에 의해 결정되는 데 이 금액은 사전에 정확하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급부 공식 과 미래

25) Kieso & Weygandt, op. cit., p.921.

사건의 추정치를 사용함으로써 단지 추정될 뿐이다.²⁶⁾

퇴직 종업원에게 퇴직 급부를 지급하기 전에 年金原價를 인식하는 방법은 確定給付型 年金制度의 본질로 부터 유래하는 2가지 문제 즉, ① 추정 또는 가정은 급부 지급액과 시기를 결정 할 미래의 사건과 관련되어야 한다. ② 年金給付原價를 각 기간에 배분 할 방법이 선택되어야 한다.²⁷⁾

保險數理的 假定은 貨幣의 時間價値(즉, 割引率)와 支給確率(死亡率, 退職率, 報酬水準, 障礙率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年金給付는 종업원의 퇴직 전에 미래 지급될 期待給付를 연금 제도의 규정, 종업원 집단의 특질, 保險數理的 假定과 利率을 변수로하여 사전에 결정하고, 이 금액을 가정된 利率로 割引하여 年金原價를 계산한다. 동일한 제도라 할지라도 가정을 달리함으로써 期待給付의 現價가 달라지므로 保險數理的 假定은 年金原價의 배분과 保險數理的 現在價値를 계산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2) 保險數理的 基金積立方式

保險計理人은 미래의 期待給付를 계산한 후 年金給付를 보장하기 위하여 연금 제도에 매년 얼마의 금액을 적립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적립 금액의 결정은 기업의 流動性, 租稅惠澤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데, 이와같은 保險數理的 基金積立方法은 2가지 관점 즉, ① 퇴직시 충분한 기금 보유를 위하여 ② 年金費用과 관련 負債를 測定 報告하기 위하여 중요하다.²⁸⁾

일반적으로 保險數理的 基金積立方法은 ① 原價接近法(cost approach)과 ② 給付接近法(benefit approach)의 2가지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1) 原價接近法

原價接近法은 퇴직시의 추정 총 급부액을 예정한 다음 推定割引率로 누적되는 이자를 포함하여 퇴직시 총 급부액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標準原價를 계산하는 방

26) FASB, SFAS NO.87, op. cit., par.12.

27) Ibid., par.13.

28) Kieso & Weygandt, op. cit., p.915.

법이다. 原價接近法에서 일정 기간에 배분된 금액은 그 기간에 획득된 급부의 保險數理的 現在價値가 아니라 純年金原價가 일정 금액 또는 일정 보수 비율이 되도록 모든 期待給付의 총 원가를 단일의 수학적 과정을 거쳐 그 기간에 할인되고 배분되어진 것이다.

예를 들면, 5년 후에 종업원에게 지급될 급부가 ₩100,000이고 年金資産의 收益率이 10%라고 가정하는 경우, 原價接近法에 의하면 매년 말에 적립될 금액은 총 급부액을 연금의 複利利子要素(compound value interest factor for an annuity)로 나누어 계산한다. 매기 적립액은 ₩16,379.75으로서 매기의 勤務原價는 동일한 금액으로 측정되는 데, 이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1에 대한 每年 10\%의 보통 年金額(5년)} * \text{期間積立額} &= \text{₩100,000} \\ 6.10510 * \text{期間積立額} &= \text{₩100,000} \\ \text{期間積立額} &= \text{₩100,000} / 6.10510 \\ &= \text{₩16,379.75} \end{aligned}$$

따라서 제 1차년도의 勤務原價는 ₩16,379.75이 되며, 연금 부채도 동일한 금액으로 보고된다. 제 2차년도의 근무 원가는 당해 년도의 勤務原價 ₩16,379.75에 前年度 年金負債에 대한 10%의 利子費用 ₩1,638<₩16,379.75*10%>을 가산한 ₩18,017.75이 되며, 年金負債는 ₩34,397.50<₩16,379.75+₩1,638+₩16,379.75>이 된다.

原價接近法은 퇴직 시점의 퇴직 급부를 위하여 매기 얼마의 금액을 적립해야 하는가에 중점을 두는 방법이다.

(2) 給付接近法

給付接近法은 특정일까지의 근무에 귀속되는 年金給付額을 결정한 다음 이 給付額의 保險數理的 現在價値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給付接近法을 예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 ① 종업원들은 3년동안 근무하다 퇴직한다.
- ② 종업원의 보수는 '86年-₩30,000 '87年-₩33,000 '88年-₩36,300이다.
- ③ 確定給付公式에 의한 年金給付는 매 근무 년수에 대해 최종 보수의 1%이고, 퇴직시에 일괄 지급한다.
- ④ 利子率(割引率)은 10%이다.

퇴직시 급부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금액은 ₩1,089이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退職時 報酬	₩36,300
給付公式比率	* 1%
<hr/>	
勤務年數	₩363
	* 3
<hr/>	
退職時 必要な 給付額	₩1,089

退職給付額이 ₩1,089이라면 年金費用과 관련 負債로 얼마를 배분해야 하는가? 이의 방법에는 累積給付方式(accumulated benefit approach)과 給付/勤務年數方式(benefit/years-of-service approach)의 2가지 給付接近法이 주로 사용된다.

(가) 累積給付接近方法

연금 비용과 관련 부채를 현재의 보수 수준과 특정일까지의 근무 년수를 이용한 연금 급부 공식에 의하여 매기 계산하는 방법으로, 이에 의해 계산된 채무를 累積給付債務(accumulated benefit obligation)라 한다.

위의 예에서 1986년도의 급부액은 연금 급부 공식에 의해 현재 보수가 ₩30,000이고 근무 년수가 1년이므로 $₩300 <= 1\% * ₩30,000 * 1년>$ 이다. 이 급부액은 2년 후에 지급되므로 부채는 2년 후에 지급 할 ₩300의 12%의 保險數理的 現在價值인 $₩239.16 <= 0.79179 * ₩300>$ 이 되며, 利子費用은 0이다. 제2차년도인 1987년의 급부액은 연금 급부 공식에 의해 $₩660 <= 1\% * ₩33,000 * 2년>$ 이 되고 연금 부채는 이 급부액이 1년 후에 지급되므로 $₩589.29 <= ₩660 * 0.89286>$ 이 된다. 그리고 연금 비용은 새로운 보수 수준이 적용되므로 연금 급부액의 증가를 保險數理的 現在價值로 계산한 $₩321.43 <= ₩660 - ₩300 = ₩360, 0.89286 * ₩360 = ₩321.43>$ 에 전년도 연금 부채에 대한 이자 $₩28.70 <= ₩239.16 * 12\%>$ 을 더한 $₩350.13 <= ₩321.43 + ₩28.70>$ 이 된다. 제3차년도의 연금 비용과 관련 부채의 계산도 제2차년도와 마찬가지로 계산된다.

(나) 給付/勤務年數方法

給付/勤務年數方法은 累積給付方法과 매우 유사하나 두드러진 차이는 累積給付法에서는 현재의 보수를 기초로 하여 연금 비용을 배분하고 부채를 계산하는데 반해 給付/勤務年數法은 계산의 기초로 최종 보수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給付/勤務年數法에서는 지급될 급부 총액의 추정이 필요하다. 즉, 給付/勤務年數法에서는 예정 총 급부액을 계산하고 그것을 근무 년수로 나누어 매기에 귀속될 급부액을 계산한다. 이에 의해 계산된 채무를 豫定給付債務(projected bene-

fit obligation)라 한다.

이의 계산 예를 累積給付接近法과 관련하여 예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累積給付方法		給付/勤務年數方法	
제1차년도: 給付	$₩30,000 * 1% * 1년$	$= ₩300$	$₩1,089 / 3년$	$= ₩363$
年金負債	$300 * 0.79179$	$= 239.16$	$363 * 0.79179$	$= 289.38$
勤務原價		239.16		289.38
利子費用		0		0
제2차년도: 給付	$₩33,000 * 1% * 2년$	$= ₩660$	$₩363 * 2년$	$= ₩726$
年金負債	$660 * 0.89286$	$= 589.29$	$726 * 0.89286$	$= 648.22$
1次年度 年金負債		239.16		289.16
年金費用		350.13		358.84
利子費用	$239.16 * 12%$	$= 28.70$	$289.16 * 12%$	$= 34.73$
勤務原價	$360 * 0.89286$	$= 321.43$	$363 * 0.89286$	$= 324.11$
제3차년도: 給付	$₩36,300 * 1% * 3년$	$= ₩1,089$	$₩363 * 3년$	$= ₩1,089$
年金負債	$1,089 * 1$	$= 1,089$	$1,089 * 1$	$= 1,089$
2次年度 年金負債		589.29		648.22
年金費用		499.71		440.78
利子費用	$589.29 * 12%$	$= 70.71$	$648.22 * 12%$	$= 77.78$
勤務原價	$429 * 1$	$= 429$	$363 * 1$	$= 363$

	年金費用	年金負債	年金費用	年金負債
제1차년도('86)	₩239.16	₩239.16	₩289.38	₩289.38
제2차년도('87)	350.13	589.29	358.84	648.22
제3차년도('88)	499.71	1,089.00	440.78	1,089.00

累積給付方法에 의해 계산된 채무를 累積給付債務라 하는데 이는 특정일 이전까지의 근무 년수와 현재의 보수에 기초한 연금 급부 공식에 의해 귀속된 급부의 保險數理的 現在價値를 의미한다. 그리고 給付/勤務年數法에 의해 계산된 채무는 豫定給付債務라 하며, 이는 특정일까지 제공된 근무에 대한 연금 급부 공식에

의해 귀속된 총 급부의 保險數理的 現在價値를 의미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같이 累積給付方法은 미래의 보수수준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給付/勤務年數法과 다르며, 그 결과 豫定給付債務는 미래의 보수 수준에 대한 가정을 사용하므로 累積給付債務보다 높게 나타난다.

年金原價를 배분하고 年金負債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2가지의 保險數理的 基金積立方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²⁹⁾

① 특정일에 발생하는 급부의 現在價値인 累積給付債務는 現在の 보수 수준에 기초한다.

② 특정일에 발생하는 급부의 現在價値인 豫定給付債務는 未來의 보수 수준에 기초한다.

2. 年金原價의 測定과 配分

1960년대 중반까지는 대부분의 기업이 특정 회계 기간의 연금 비용으로 퇴직급부로 지급된 또는 연금 기금에 적립한 금액을 인식함으로써 연금 제도에 現金主義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특정 회계 연도에 지급되거나 적립되는 금액은 연금채무와는 관계없는 租稅, 현금의 이용 가능성, 소득 수준 등의 財務管理上의 문제이고, 임의적인 것이므로 現金主義를 적용하게 되면 pay-as-you-go(급부가 퇴직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되었을 경우에만 年金原價로 인식하는 방법)나 terminal funding(연금 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만 年金原價를 인식하는 방법)방법을 사용하여 종업원의 퇴직 시점 이전에는 年金原價를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I/S에 나타나는 年金原價額이 조작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비용으로 부담될 年金原價는 다른 원가와 비용의 측정, 인식과 마찬가지로 발생, 측정, 移延概念이 적용되는 發生主義로 설명되어야 한다.³⁰⁾ 發生主義 會計를 채택하는 목적의 하나

29) Kieso & Weygandt, op. cit., p.920.

30) 李相奉; “企業年金會計에 관한 研究”, 濟州大學校 論文集, 第29輯, 濟州大學校, 1989, p.129.

는 收益과 費用을 對應시키는 것이므로 年金會計에서도 經濟的 效益을 얻게되는 기간에 年金原價를 인식함으로써 對應의 原則이 적용되어야 한다.

確定給付型 年金制度에서 年金原價는 勤務原價, 利子原價, 年金資産에 대한 實際收益, 過去勤務原價의 償却額, 利得과 損失을 포함하는 純期間年金原價 (net periodic pension cost)로 결정된다.³¹⁾

1) 勤務原價(service cost)

勤務原價는 正常原價라고도 하는 것으로 종업원이 노동력을 제공한 데 대한 대가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채의 증가분으로 移延賃金을 의미한다. 勤務原價要素는 특정의 회계 기간에 종업원이 제공한 근로에 대해 연금 급부 공식에 의해 귀속된 保險數理的 現在價値로 결정된다.³²⁾

회계는 일반적으로 交換을 기록하기 위한 근거로서 합의의 개념으로 여겨지므로, 종업원이 수취할 급부를 확정하는 연금 조건(연금급부공식)은 연금 원가와 연금 부채가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나타내는 가장 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또한 가득 급부와 발생 원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³³⁾ 그러므로 특정 회계 기간의 연금 원가를 측정하는 데 給付接近方式이 사용된다.

SFAS NO.87에 의하면 연금 원가를 측정하는 경우 여러가지 방법 중 단일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대체안보다 더 나은 측정치를 제공해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재무 보고의 비교 가능성과 이해를 증진시켜 연금 정보의 유용성은 증대된다고 한다. 이 경우 給付接近方法 중 어떤 방법이 급부를 보고하는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방법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근무 원가 요소를 측정하는 것은 연금 부채를 측정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근

31) FASB, SFAS NO.87, op. cit., par.20.

이 原價는 곧바로 費用化되거나 在庫資産과 같이 資産原價로 資本化될 수 있으므로 原價와 費用이라는 用語가 互換的으로 사용된다.

(Paul B.W. Miller, "the New Pension Accounting (Part I)", *Journal of Accounting*, Jan., 1987, p.99.)

32) FASB, SFAS NO.87, op. cit., par.21.

33) Ibid., par.97.

무 원가는 본질적으로 일정 기간에 제공된 근무에 귀속되는 예정 급부 채무의 일부분이다.³⁴⁾ 만일 연금 급부 공식에 미래의 보수 수준이 규정된 경우에는 현재의 채무와 기간 연금 비용을 측정하는 데 미래의 보수 수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종업원의 최종 급여의 1%를 급부로 지급한다는 것은 현재 급여의 1%를 지급한다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급부/근무년수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재무 보고는 얼마간의 가정이나 추정을 필요로 하며 繼續企業의 가정에 의해서 작성되어야 한다. ② 퇴직 급부는 퇴직 일 또는 그 가까운 시점의 보수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므로 보수 수준, 적립액, 투자 수익률 등이 예측되어야 한다. ③ 기금 적립이 예측된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예정 급부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면 기금이 과대 적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대 적립된 것으로 보고되고 그 반대의 경우에도 충분히 적립된 것으로 보고되기 때문이다.³⁵⁾

이러한 방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현재의 연금 비용이 미래의 보수 증가를 포함하는 것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며, 만일 연금 제도를 오늘 종결한다면 누적 급부에 대한 채무만을 지급해야 한다고 한다.³⁶⁾

이러한 견해는 근무원가를 측정하는 데 여러가지 방법을 허용하는 APB Opinion NO.8과는 달리 근무원가의 측정을 연금 급부 채무의 측정을 기준으로 하여 원가 배분방법을 통일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³⁷⁾

2) 利子原價 (interest cost)

연금은 이연된 보수이므로, 임금의 이러한 요소는 이연되어 부채가 발생하게 된다. 부채는 할인율로 기록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자가 발생하게 되어

34) Ibid., par.124.

35) IASC, IAS NO.19, "Accounting for Retirements Benefits in the Financial Statements of Employers'", (IASC, 1983), par.19.

36) Kieso & Weygandt, op. cit., p.923.

37) 李相奉; 前揭論文, p.130.

예정 급부 채무를 증가시키는 데 그 증가분(利子 상당액)이 이자 원가 요소로

이자원가 = (미적립예정급부채무 * 할인율)로 계산된다.

이자 원가 요소는 연금 원가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만일 예정 급부 채무를 할인하는 데 높은 이자율을 사용하면 예정 급부 채무는 적게 되어 연금 기금이 과대 적립한 것이 되며, 반대의 경우에는 과소 적립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이자율은 ① 보험계리인의 추정에 의한 연금 기금의 투자 수익율 ② 장기 사채 평균 이자율 ③ 자본 비용이다.³⁸⁾

SFAS NO.87에서는 연금 급부가 효과적으로 청산될 수 있는 이자율, 채무를 청산하는 데 효과적인 이자율로 추정되어야 한다³⁹⁾고 하면서 내재적인 것보다 명시적인 가정이 정보의 유용성을 위해 바람직하다⁴⁰⁾고 한다.

3) 年金資産의 實際 收益(actual return on pension asset)

연금 자산은 일반적으로 연금 급부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리, 제한된 주식, 사채, 기타 부동산과 같은 투자 자산의 형태로 보유되며 사용자에 의해 적립된 금액과 불입금을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을 포함한다.⁴¹⁾

연금 자산의 실제 수익은 배당 수익, 이자 수익과 같은 실현 수익과 시장 가치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미실현 수익으로 구성된다. 실제 수익은 기초와 기말의 연금 기금 자산(해당연도의 불입금과 연금지급액을 가감한)의 공정 가치를 기초로 하여 결정된다.⁴²⁾ 이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실제수익 = (기말 연금자산-기초 연금자산)-(기중의 불입금-기중의 급부지급액)

38) John F. Dewhrist, "A Conceptual Approach to Pension Accounting", *Accounting Review*, 1971, p.368.

39) FASB, SFAS NO.87, op. cit., par.40.

40) Ibid., par.191.

41) Ibid., par.19.

42) Ibid., par.23.

4) 過去勤務原價의 償却額(amortization of unrecognized prior service cost)

연금 제도를 새로이 시행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변경 이전에 제공된 근무에 대해 인정되는 소급 급부의 원가를 過去勤務原價라 한다. 사용자가 소급 급부를 제공하는 것은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이다.⁴³⁾ 그러므로 소급 급부는 연금 제도를 변경한 해에 전부 연금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 제도에 의해 급부를 받고자 하는 종업원의 미래 근무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⁴⁴⁾

SFAS NO.87에서는 2가지 상각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⁴⁵⁾ 첫째 방법은 과거 근무 원가를 일 회계 기간 동안 근무를 제공한 종업원의 근무 년수와 관련시키는 방법이다. 즉, 총 근무 원가는 연금 제도의 채택, 변경으로 예정 급부 채무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이 금액은 연금 제도의 변화로 영향을 받게 되는 종업원들의 잔여 근무 기간에 걸쳐 배분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먼저 종업원들의 예상 총 근무년수를 계산하고 전체 근무 원가를 총 근무 년수로 나누어 단위 원가를 계산한다. 이 단위 원가에 매년의 근무 년수를 곱하여 매기의 상각액을 계산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예를 들어, 1987년 1월 1일에 연금 제도를 변경하는 경우 과거 근무 원가가 ₩400,000이고, 당사의 종업원들은 향후의 근무 년수에 따라 A,B,C,D의 4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지고 퇴직 예상일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자.

従業員集團	従業員數	豫想 退職日
A	20	1987年 12/31
B	10	1988年 12/31
C	20	1989年 12/31
D	25	1990年 12/31
	200	

43) Ibid., par.159.

44) Kieso & Weygandt, op. cit., p.925.

45) FASB, SFAS NO.87, op. cit., par.26.

〈表Ⅲ-1〉 過去勤務原價의 償却

年度	(勤務期間)				合計	單位原價	償却金額
	A	B	C	D			
1987年	20	10	20	25	75	₩2,000	₩150,000
1988年	-	10	20	25	55	2,000	110,000
1989年	-	-	20	25	45	2,000	90,000
1990年	-	-	-	25	25	2,000	50,000
合計	20	20	60	100	200		₩400,000

資料: Paul B.W. Miller, The New Pension Accounting, *Journal of Accountancy*. (Feb. 1987), p.89.

〈表Ⅲ-1〉에서 계산된 것처럼 종업원들의 예상 총 근무년수하는 200년이므로 단위 원가는 $₩2,000 <= ₩400,000 / 200年 >$ 이 되며, 이를 각 회계 기간의 근무 년수에 곱하면 각 회계 기간의 상각액이 계산된다.

또 다른 방법은 종업원의 평균 잔여 근무 년수를 구한 다음 과거 근무 원가를 평균 잔여 근무년수로 나누어 매기의 상각액을 계산하는 定額償却方法(straight-line amortization method)이다. 위의 예에 의하면 평균 잔여 근무 년수가 23年 <200年 / 75名 >이므로 매기의 상각액은 $₩150,000 <= ₩400,000 * 8/3年 >$ 이 된다.

5) 利得과 損失(gains and losses)

第 2 章에서 論議된 바와같이 연금 제도에서의 부채와 연금 원가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자율, 사망율, 퇴직율, 보수 수준 등의 보험수리적 가정이 사용된다. 그러나 미래 사건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므로 추정치와 실제 결과간에는 편차가 생기게 되어 조정이 필요하게 되는 데, 이 때의 조정액을 이득과 손실 또는 보험 수리적 손익(actuarial gains and losses)이라 한다. 이득과 손실은 가정의 변경, 추정과 실제간의 차이로 나타나는 豫定給付債務 또는 연금 자산액의 변동을 의미한다. 즉, 연금 원가를 계산함에 있어 연금 자산에 대한 기대 수익은 연금 자산의 시장 관련 가치에 기초하므로 일정 회계 기간동안의 연금 자산에 대한 실제 수익과 기대 수익간의 차액이 곧 이득과 손실이다.

純期間年金原價에 계상될 이득과 손실은 ① 당기의 연금 자산에 대한 실제 수익과 기대 수익간의 차액 ② 전기에 발생한 미인식 순이익과 손실의 상각액이다.

이득과 손실에 대한 처리 방법은 즉시 인식법과 배분법의 2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일반적으로 배분법이 사용된다. 即時認識法은 연금 제도의 운영과 직접 관련되지 않거나 정상적인 영업 활동과 관련이 없는 工場閉鎖, 處分등과 연금 제도의 清算, 縮小, 特別退職 給付, 年金資産의 還收 등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다.⁴⁶⁾

이득과 손실은 추정과 실제간의 차이에 의해 조정되는 금액을 의미하므로 기업 환경의 변화로 이 금액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연금 원가의 다양한 변화를 제거하고 연금 원가에 관한 조정으로 인식되는 이득과 손실의 금액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SFAS NO.87에서는 corridor approach를 사용한다.⁴⁷⁾ 이 방법은 純期間年金原價의 다양한 변동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豫定給付債務 또는 시장 관련 자산가치(公正價値) 중 큰 것의 10%를 넘는 확실한 이득과 손실만을 인식함으로써 이득과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법이다.

만일 豫定給付債務가 ₩100,000이고 시장 관련 자산 가치가 ₩150,000이라면 이득과 손실이 ₩15,000($=₩150,000*10%$)를 넘지 않으면 이를 인식하지 않는다. 이때 ₩15,000을 corridor라 한다. 10%를 넘는 초과분은 연금 제도에 의해 연금 급부를 받고자 하는 종업원들의 평균 잔여 근무 기간에 걸쳐 상각한다.

利得과 損失이 어떻게 年金原價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예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하자.⁴⁸⁾

46) FASB, SFAS NO.88, op. cit.

47) FASB, SFAS NO.87, op. cit., par.187.

48) Kieso & Weygandt, op. cit., pp.928-929.

예상 미래 총 근무년수의 결정

종업원 집단	매년 예상 퇴직 종업원 수	총 근무 년수
A1 - A9	9	9
B1 - B9	9	18
C1 - C9	9	27
D1 - D9	9	36
E1 - E9	9	45
F1 - F9	9	54
G1 - G9	9	63
H1 - H9	9	72
I1 - I9	9	81
J1 - J9	9	90
	90	495

위 자료에서 평균 잔여 근무 기간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frac{\text{예상 총 근무년수}}{\text{종업원 수}} = \text{평균 잔여 근무 기간}$$

$$\frac{495\text{년}}{90\text{명}} = 5.5\text{년}$$

따라서

미인식 이득과 손실은 기초의 미인식 이득과 손실이 corridor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금 원가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므로 만일 특정 회계 기간의 초에 미인식 이득과 손실이 없다면 당기에는 미인식 이득과 손실은 0가 된다. 이득과 손실의 상각을 예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하자.

	1987年(기초)	1988年	1989年
예정급부채무	₩2,100,000	₩2,600,000	₩2,900,000
시장관련 자산가치	2,600,000	2,800,000	2,700,000
미인식 손손실	0	400,000	280,000

평균 잔여 근무 기간이 5.5년이므로 미인식 손손실의 상각액은 다음과 같다.

< 表Ⅲ-2 >

未認識 純損失의 償却額

年度	豫定給付債務 ^{a)}	年金資産 ^{a)}	Corridor	未認識 純損失 ^{a)}	當期の 償却額
1987年度	₩2,100,000	₩2,600,000	₩260,000	₩-0-	₩-0-
1988年度	2,600,000	2,800,000	280,000	400,000	21,818 ^{b)}
1989年度	2,900,000	2,700,000	290,000	658,182	66,942 ^{c)}

* a) 期初殘額

b) ₩400,000 - ₩280,000 = ₩120,000 ₩120,000/5.5 = ₩21,818

c) ₩400,000 - ₩21,818 + ₩280,000 = ₩658,182

₩658,182 - ₩290,000 = ₩368,182 ₩368,182/5.5 = ₩66,942

資料 : Donald E. Kieso and Jerry J. Weygandt, *Intermediate Accounting*, 5th ed. John Wiley & Sons, 1986. p 929.

<表Ⅲ-2>에서 보는 바와같이 1988년에 인식된 손실은 ₩21,818 만큼 연금 원가를 증가시킨다. 이 금액은 ₩400,000보다 적은 금액으로 corridor approach가 연금 원가에 대한 이득과 손실의 효과를 줄인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corridor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이득과 손실은 경제적 가치면에서 실제 가치는 물론 추정 가치의 변화를 조정함으로써 발생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득과 손실 중 어떤 것들은 상쇄된다는 것이다.

3. 年金資産과 負債의 認識 · 測定

1) 年金資産

年金資産은 사용자에 의해 연금 제도에 불입된 금액과 불입금의 투자로 가득된 금액을 합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株式, 社債, 기타의 投資資産의 형태로 보유되며, 연금 급부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 자산과 분리되며 그 사용 또한 제한된다.

年金資産은 측정일 현재의 公正價値로 측정한다. 연금 자산의 공정 가치는 강요나 청산이 아닌 제 3자간의 현금 판매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그리고 건물, 설비, 가구, 비품 등 연금 제도의 운영에 사용되는 연금 자산은 原價로 평가한다.⁴⁹⁾ 연금 자산을 공정 가치로 평가하는 이유는 사용자의 추가적인 기금 적립없이 급부를 지급해야 할 연금 제도의 능력과 약정된 급부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미래의 불입액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정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보고일에 공정 가치에 의한 측정이 요구된다.

(1) 先給年金原價(prepaid pension cost)

先給年金原價는 純期間年金原價가 사용자가 불입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발생하는 超過積立年金原價(overfunded pension cost)⁵⁰⁾로

선급연금원가 = 순기간연금원가 - 발생연금원가의 식으로 계산된다.

이와 반대의 경우이면 그 차액은 연금 부채가 되며, 양자가 동일하면 회계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연금 부채인 未積立發生年金原價와 先給年金原價는 서로 相殺된다.

(2) 移延年金資産(未豫測損失)

年金資産의 公正價値가 장부 가격보다 작을 경우, 장부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되는 경우 및 保險數理的 요인에 의하여 적게 되었을 경우 이를 移延시켜 자산으로 기록한 후 상각시킨다.

(3) 無形年金資産(intangible pension asset)

SFAS NO.87에서는 B/S에 표시되는 연금 부채인 先給/發生 年金原價 計定の 貸邊殘額과 註釋에 공시되는 累積給付債務에 대한 내용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最小負債概念을 도입하고 最小負債가 연금 부채를 초과하는 금액을 追加負債로 인식토록 하면서 그 상대 계정 과목으로 無形年金資産을 인식하도록 한다. 이는 豫定給付債務에서 연금 기금 자산을 차감한 차액이 연금 부채와 큰 차이를 나타낼때 이를 축소하고자 하는 의도로, 추가로 연금 부채를 인식함에 따라

49) FASB, SFAS NO.87, op. cit., par.49-51.

50) Ibid., par.35.

나타난 자산이다.⁵¹⁾

無形年金資産이 B/S에 표시될 수 있는 특성을 갖느냐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無形年金資産이 자산으로 기록되기 위해서는 자산의 개념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나 단지 追加負債의 인식을 위한 相對的 計定科目으로 인식되고 있어 부채의 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

2) 年金負債

연금 부채는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이며, 발생 가능한 미래의 經濟的 犧牲이다.⁵²⁾ 연금 부채의 측정은 앞에서 본 純期間年金原價要素의 측정과 마찬가지로 保險數理的 假定에 기초한다.

(1) 未積立 發生年金原價(unfunded accrued pension cost)

未積立 發生年金原價는 純期間年金原價가 사용자가 연금 제도에 불입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는 부채⁵³⁾로

미적립 발생연금원가 = 순기간연금원가 - 기간불입액의 식으로 계산된다.

(2) 最小負債(minimum liability)

累積給付債務가 연금 자산의 공정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자는 최소한 미적립 누적 급부 채무와 동일한 부채를 B/S에 인식해야 하는 데 이를 最小負債라 한다.⁵⁴⁾

연금 제도를 새로이 채택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過去勤務原價는 기업의 累積給付債務를 증가시키나 이는 당기에 전액 연금 원가로 계상되는 것이 아니라 상각액만이 연금 원가로 인식되므로 미상각된 過去勤務原價는 연금 자산과 부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그 결과 B/S에 표시되는 연금 부채와 註釋에서 공시하는 금액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데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FASB가 도

51) Ibid., par.37.

52) J.F. Dewhrist, op. cit., pp.365-373.

53) FASB, SFAS NO.87, op. cit., par.35.

54) Ibid., par.36.

입한 개념이 最小負債 개념이다.⁵⁵⁾

만일에 FASB가 완전한 資本化 方法을 채택한다면 사용자는 豫定給付債務, 年金 資産, 過去勤務原價를 모두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FASB는 최소 부채 개념을 도입하여 제한적인 資本化方法을 채택하였다. 최소 부채를 인식함에 있어서는 豫定給付債務 대신에 보다 작은 累積給付債務를 이용함으로써 최소 부채 금액 자체도 축소하고 있다. 최소 부채를 인식하는 경우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⁵⁶⁾

① 발생 연금 부채가 최소 부채보다 더 크면 아무런 회계 처리도 하지 않는다.

② 발생 연금 부채가 최소 부채보다 적다면 사용자는 추가 부채를 인식해야 한다.

추가 부채는 최소 부채와 동일하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발생 금액과 결합된다. 즉, 최소 부채가 ₩1,000이고 발생 부채가 ₩750이라면 ₩250이 추가 부채가 인식되어야 하며, 잔액은 B/S에 부채 ₩1,000으로 기록하기 위하여 ₩750에 추가된다.

③ 최소 부채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先給年金原價를 갖는다면 추가 부채는 자산과 相計되고 최소 부채와 동일한 純借邊殘額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최소 부채가 ₩1,000이고 선급 원가가 ₩400이라면 사용자는 ₩1,400의 추가 부채를 인식해야 한다.

④ 추가 부채의 금액은 단지 조정 사항일 뿐 이자가 발생되지도 않고, 상각되지도 않으며, 지급되지도 않는다.

⑤ 추가 부채의 상대 계정 과목은 과거 근무의 미상각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無形年金資産이 되고, 초과하면 株主持分에 대한 差減計定이 된다.

55) Paul B.W. Miller, " the New Pension Accounting Part II)", *Journal of Accountancy*, Feb., 1987, p.89.

56) Paul B.W. Miller, op. cit., pp.91-92.

(株)五賢의 1987年-1989年の 자료에 의한 최소 부채와 추가 부채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表Ⅲ-3〉 最小負債와 追加負債

	1987年	1988年	1989年
누적급부채무	₩ (9,345)	₩ (12,737)	₩ (17,020)
연금기금자산	11,150	12,870	14,630
최소부채	0	0	(2,390)
발생연금원가			(2,138)
추가부채			₩ 252

資料 : Paul B.W.Miller The New Pension Accounting, *Journal of accountancy*. (Feb.1987),p.93.

〈表Ⅲ-3〉에서 과거 근무 원가의 미상각액이 ₩1,625이라면, 추가 부채액은 이 금액보다 작은 ₩252이므로 借邊에는 無形年金資産을 인식하여야 한다. 1989년말의 추가 부채 인식을 위한 분개는 다음과 같다.

Dr. 無形年金資産 252 Cr. 追加年金負債 252

B/S에는 ₩252의 무형 연금 자산이 표시되며, ₩252의 추가 연금 부채는 ₩2,390의 최소 부채를 만들기 위하여 ₩2,138의 발생 부채에 가산된다.

4. 年金會計 情報의 公示

會計의 目的은 會計情報利用者가 經濟的 意思決定을 하는 데 유용한 財務的 情報을 識別, 測定, 傳達하는 것이므로 年金會計의 目的은 年金에 관한 情報利用者의 經濟的 意思決定에 目的適合하고 信賴할수 있는 情報을 提供하는 것이라 하겠다.

기업 연금 회계에서의 주된 정보 이용자는 사용자와 종업원이다. 사용자는 연

금 원가, 연금 부채 등 연금에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연금 기금에의 불입금을 불입하기 위한 합리적인 財務的 意思決定을 위하여 기업 연금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하며, 종업원들은 퇴직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므로 장래의 연금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된 연금 기금 자산의 가치,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연금 부채의 금액, 공정한 회계 처리 방법에 의해 계산되고 관리되고 있는 가에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기타의 연금 회계 정보 이용자들 역시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연금 원가와 연금 부채, 연금 기금 자산 등을 산정한 근거를 필요로 한다.

사용자 회계에서는 연금 기금 자산과 종업원에 대한 연금 지급 의무의 궁극적인 책임은 연금 제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자신에게 있다⁵⁷⁾고 가정하므로 연금과 관련된 정보를 사용자의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사용자의 I/S에는 일반적인 수익과 비용 항목에 추가하여 연금 비용으로 純期間年金原價를 인식하여 영업 성과를 계산하며, B/S에는 자산과 부채 항목에 추가하여 연금과 관련된 先給年金原價와 發生年金原價를 자산과 부채로 표시한다.⁵⁸⁾

연금과 관련된 정보는 연금 제도의 복잡성과 연금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으로 財務諸表에 모두 반영할 수 없으므로 정보 이용자에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만 財務諸表에 표시하고 중요하나 본문에 적절히 표시할 수 없는 사항은 註釋事項으로 공시한다. 이러한 본문의 공시 내용과 주석 사항은 공시의 확대라는 일반적 추세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기업 연금 회계는 純期間年金原價의 認識, 年金資産과 負債의 測定 및 기타 관련 情報를 測定, 公示함으로써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意思決定을 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1) 財務諸表의 本文 公示事項

57) 具致謨; “企業年金會計의 理論的 背景(II)”, 保險調查月報8號, 韓國保險公社, 1988, pp.9~10.

58) 上揭論文, p.10.

確定給付型 年金制度에서는 發生主義에 의해 계산된 純期間年金原價는 I/S에 표시하며 연금 원가 중 연금 기금에 적립되지 않은 금액은 연금 부채로, 연금 원가를 초과하여 적립된 금액은 연금 자산으로 B/S에 표시한다.

연금 제도의 채택, 변경으로 발생하는 미적립 과거 근무 원가는 부채로 보고되지 않는다. 과거 근무 원가는 發生主義 會計에서는 그 것이 비용으로 인식될 때까지는 회계상 중요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過去勤務原價가 發生 또는 移延된 부분에 대해서만 B/S에 표시한다.⁵⁹⁾ 그러나 累積給付債務가 연금 기금 자산의 公正價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追加負債로 인식하여 無形年金資産 또는 株主持分에 대한 差減計定으로 보고된다. 즉, 追加負債額이 未認識過去勤務原價보다 적으면 無形年金資産으로 그 반대의 경우이면 차액을 株主持分에 대한 差減計定으로 보고된다.

2) 財務諸表의 註釋 公示事項

연금 제도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므로 재무제표에 공시되지 않은 정보는 註釋에 공시되어야 한다. 註釋情報은 연금 제도 고유의 복잡성과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註釋公示로 요구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⁶⁰⁾

(1) 대상 종업원 집단, 급부 공식의 유형, 기금 적립 정책, 보유 자산의 형태, 기간 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의 성질과 그 효과를 포함하는 연금 제도에 대한 내용

급부 공식에 대한 설명은 연금 원가가 급부 공식에 의해 측정되기 때문이며, 기금 적립 정책과 보유 자산의 형태에 대한 공시는 현금 흐름과 연금 비용의 차이는 물론 현금 흐름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며, 중요한 사건에 대한 공시는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연금 제도의 장기적 추세에 대한 효과를 보다 잘 예측할 수 있

59) Kieso & Weygandt, op. cit., p.937.

60) FASB, SFAS NO.87, op. cit., pars.213-222.

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2) 당해 기간의 純年金原價(年金費用)의 구성 요소

연금 원가의 구성 요소에 관한 정보는 연금 비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와 연금 비용이 매기 변화되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3) 割引率과 報酬增加率

이들 가정은 연금 비용과 예정 급부 채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 상이한 가정을 사용하는 기업간에 의미있는 비교를 하는 경우, 가정에 대한 정보는 필수적이다.

(4) 연금 제도의 기금 적립 상태와 B/S에 보고되는 금액을 일치시키는 明細書

- ① 年金資産의 公正價値
- ② 累積給付債務, 受給給付債務, 豫定給付債務
- ③ 未認識 過去勤務原價
- ④ 未認識 利得과 損失
- ⑤ 基準 適用日에 存在하는 殘存 純資産 또는 負債
- ⑥ 認識된 追加負債
- ⑦ B/S에 計上된 發生/先給年金原價(①-⑥項目을 結合한 結果額)

(5) 연금 자산 중 사용자나 기타 관련 집단이 소유하고 있는 유가 증권의 종류와 금액, 종업원과 퇴직자의 年次給付額의 확정액, 상각 방법 등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예시를 통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例示)

(株)甲은 100名の 종업원들을 위하여 確定給付型 年金制度를 시행한다. 1986年 1月1日字로 SFAS NO. 87을 채택한다. 年金制度 시행일의 豫定給付債務와 年金資産은 다음과 같다.

豫定給付債務	₩2,000,000
年金資産(公正價値)	900,000

移延 移轉損失(未認識 純債務)	₩1,100,000

保險計理人과의 상의 후 다음 사항을 추정하여 추가 정보로 사용하기로 한다.

1) 給付/勤務年數法에 의한 當期の 勤務原價는 ₩100,000이다.

- 2) 當期의 基金 拂入額은 ₩334,000이다.
- 3) 割引率은 9%이다.
- 4) 100名의 종업원들 中 5%가 尙來 20年 동안에 每年 退職한다.
- 5) 1986年 12月 31日字 情報은 다음과 같다.
- | | |
|----------------|------------|
| ① 시장관련 자산가치 | ₩1,100,000 |
| ② 年金자산(공정가치) | ₩1,165,000 |
| ③ 累積給付債務 | ₩1,254,000 |
| ④ 豫定給付債務 | ₩1,879,000 |
| ⑤ 未認識 純利益 | ₩ 251,000 |

먼저 1986年度의 年金原價로 보고될 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株)甲은 ① 勤務原價, ② 豫定給付債務에 대한 利子, ③ 年金資産에 대한 實際收益, ④ 過去勤務原價 또는 移延 移轉損失의 償却額, ⑤ 未認識 利得과 損失의 償却額 의 5가지 要素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들 中 4가지 要素를 계산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데 이는 다음과 같다.

勤務原價	₩100,000
利子<=(₩2,000,000*9%)>	180,000
實際收益<=(₩900,000*9%)>	(81,000)
未認識 利得과 純損失	-0-

⑤의 移延移轉損失(未認識 純債務)의 償却額 계산은 복잡한 데, 이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 1) 종업원의 平均 잔여 근무 기간을 계산한다.

$$\text{平均잔여근무기간} = \frac{\text{총 기대 근무년수}}{\text{종업원 수}}$$

$$\text{총 기대 근무년수} = \frac{N(N+1)}{2} * P$$

N: 尙來의 근무기간
P: 매년 감소 인원

1986年度の(株)甲의 B/S 와 I/S는 다음과 같다.

B/S		1986.12/31 (年金情報만 公示)	
資産		負債	
無形資産	119,000	發生年金原價	119,000
移延年金原價			
I/S		1986.1/1-12/31 (年金情報만 公示)	
年金原價			304,000

財務諸表 註釋

註釋 1. 同 社는 실제로 모든 종업원을 대상으로 年金制度를 시행한다. 同社는 퇴직 전 3년동안의 보수 수준에 기초하여 年金給付를 지급한다. 年金制度의 資産은 株式과 社債로 구성된다. 同 社의 基金積立 政策은 수혜 종업원의 평균 보수 비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일정 비율로 기금을 적립한다. (현재는 12.9%)

1986年の 純期間 年金原價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勤務原價	₩100,000
利子原價	180,000
年金資産 實際收益	(81,000)
其他 要素	105,000
純期間 年金原價	₩304,000

다음은 연금제도의 기금 적립 상태와 1986.12.31일 현재의 B/S에서 인식된 금액을 나타낸다. (단위:천원)

受給給付債務	₩(1,103)
未受給給付債務	(151)
<hr/>	
累積給付債務	₩(1,254)
豫定給付債務	(1,879)
年金資産(公正價値)	1,165
<hr/>	
基金積立狀態	(714)
未認識 純利得	(251)
移延移轉損失	995
追加負債	(119)
<hr/>	
B/S에 認識된 負債	₩(89)



(株)甲의 차후 3년간의 적절한 회계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1986	1987	1988	1989
資産과 債務				
	(期末 殘額, 單位:천원)			
시장관련자산가치	₩1,100	₩1,480	₩1,590	₩1,572
연금자산(공정가치)	1,165	1,505	1,622	1,517
累積給付債務	1,254	1,628	1,616	1,554
豫定給付債務	1,879	2,442	2,424	2,331
未積立 累積給付	89	123	0	37
過大積立 累積給付	0	0	6	0

認識된 金額

發生/先給年金原價(期初)	0	30	80	150
年金原價	(304)	(335)	(397)	(361)
基金 拂入額	334	385	467	361
發生/先給年金原價(期末)	₩30	₩80	₩150	₩(31)
移延 移轉損失과 過去勤務原價	995	1,574	1,412	1,259
未認識 純利益	(251)	(557)	(460)	(476)

1987年度の 會計處理 :

同 社는 1987년 1월1일자로 과거 근무에 대한 效益을 인정하여, 未認識 過去勤務原價가 증가하였다. 연금 정보를 계상하기 위한 分介는 다음과 같다.

Dr. 年金原價	335	Cr. 現金	385
先給/發生年金原價	50		
Dr. 無形資産-移延年金原價	84	Cr. 追加負債	84

追加負債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未積立累積給付(最小負債)	₩(123)
先給年金原價	80
追加負債 - 1987年	203
追加負債 - 1986年	119
增加(減少)된 追加負債	₩84

B/S

資産

無形資産-移延年金原價 203

負債

發生年金原價 123

I/S

年金原價	335
------	-----

1988年度の 會計處理 :

Dr. 年金原價	397	Cr. 現金	467
----------	-----	--------	-----

發生/先給年金原價	70
-----------	----

Dr. 追加負債	203	Cr. 無形資産-移延年金原價	203
----------	-----	-----------------	-----

移延資産이 累積給付債務를 초과하므로, 追加負債는 필요없다. 따라서 追加負債와 無形資産의 잔액은 제거된다.

追加負債 - 1988년	₩ -0-
--------------	-------

追加負債 - 1987년	203
--------------	-----

增加(減少)된 追加負債	₩203
--------------	------

B/S

資産

先給年金原價	150
--------	-----

I/S

年金原價	397
------	-----

1989年度の 會計處理 :

Dr. 年金原價	361	Cr. 現金	180
----------	-----	--------	-----

發生/先給年金原價	181
-----------	-----

Dr. 無形資産-移延年金原價	6	Cr. 追加負債	6
-----------------	---	----------	---

未積立累積給付	₩37
發生年金原價	31
<hr/>	
追加負債 - 1989年	6
追加負債 - 1988年	-0-
<hr/>	
增加(減少)된 追加負債	₩6

B/S

資産

無形資産-移延年金原價 6

負債

發生年金原價 37

年金原價

361



IV. 우리나라 退職金 會計上의 問題點 및 改善方向

退職金이라 함은 넓은 의미로는 종업원의 퇴직을 사유로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일시금 또는 정기적인 급여를 의미하나 좁은 의미로는 퇴직 일시금 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의 급여 형태는 공적 연금, 기업 연금, 퇴직 일시금으로 구분한다.⁶¹⁾

우리나라의 경우 年金制度는 사회 보장 제도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는 공적 연금 제도가 있는데 이는 일종의 집단 보험으로 사회 보장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정부 또는 법률에 의한 특수 법인이 운영 주체가 되고 적용 대상자 선정의 강제성, 과거의 기여금과 소득에 근거하며 최저 생활급 지급을 그 근본 목적으로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금 제도는 공무원 연금 제도, 군인 연금 제도, 사립 학교 교원 연금 제도,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중 장애 보상 연금과 유족 보상 연금 및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 연금 제도가 있으나 기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금 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국민 연금 제도의 급여 내용을 보면 <表IV-1>과 같다.

한편, 기업 퇴직금 제도는 1961년 2월 4일 근로 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동법 제 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시 퇴직 일시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행 퇴직금 제도는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역할, 정년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 수당적 역할, 공로 보상적 역할 등 복합적인 기능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문제점으로는 노후 생활에 대한 확실한 보장책인 연금 형태가 아닌 퇴직 일시금 제도로

61) 閔載成 外; 「退職金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韓國開發研究院, 1984, p.16.

< 表 N-1 >

國民年金制度의 給與 內容

給與 種類	對 象	給 與 水 準
基本年金 * 完全老齡年金	20년 가입자(60세 이상) 20년 이상 가입자	최종보수월액의 40% 20년 초과년수마다 연2%가산
* 減額年金 * 在職者年金	15-20년간입자(55세 이상) 20년이상 가입자(60세 이상 계속 재직자)	최종보수월액의 29~37% 기본연금액의 50~100%
* 特例年金	연금제 실시시 45~60세인 가입자	기본연금액의 25~70%
障 碍 年 金	1년 이상 가입자 (사고, 질병으로 불구, 장애사)	기본연금액의 60~100%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
遺 族 年 金	1년이상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시(배우자와 18세미만 자녀)	기본연금액의 40~60%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返 還 一 時 金	15년미만 가입자	본인부담금과 퇴직금 조정분*재형저축이자율 사용자부담금*일정이자율

資料 : 私立學校教員年金管理公團, 「月刊 私學年金」, 1986.10, p.3.

운영되고 있다는 점⁶²⁾, 대다수의 기업들이 퇴직금 지급을 위한 퇴직 급여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기는 하나 그 적립액이 퇴직금으로 지급 할 금액보다 적게 적립하고 있으며 이것마저 사외 유보를 하지 않는 기업이 절대 다수를 차지함으로써 기업이 도산하거나 폐쇄될 경우 퇴직금 지급 보장을 둘러싼 노사 분류 혹은

62) 上揭書, p.71.

사회적 문제를 유발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⁶³⁾, 기업 연륜이 쌓임에 따라 기업 규모의 확대로 종업원 수의 증가와 인건비의 상승, 근무 년수의 증가 등으로 인한 기업의 퇴직금 지급 부담의 증가로 기업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이다.

1. 退職金 會計上の問題點

퇴직금은 사용자가 퇴직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추가 지급이며, 勤勞基準法에 의해 그 지급이 강제된 금액으로 근무 년수에 비례하여 퇴직시에 종업원에게 일시에 지급되는 것이다. 따라서 퇴직금은 그 발생 시기로 보아 퇴직시 일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의 재직중에 經常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그 누적분을 退職給與充當金으로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企業會計基準 第47條 1項에 의하면 '當期の收益에 對應하는 費用으로서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한 것과 當期の收益에서 差減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推算하여 負債性 充當金으로 計上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同 基準 附則 第5項은 '1990年 3月27日 改正된 企業會計基準을 적용함에 있어 이 基準 施行日 이후 최초로 開始하는 會計年度の 直前 會計期間末 B/S에 計上되어 있는 金額이 全任職員이 一時에 退職할 경우에 지급해야 할 退職金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이 基準 施行日 以後 최초로 開始하는 會計年度부터 10年이내의 기간에 每期 均等額을 추가로 計上하거나 每期 計上해야 할 退職給與充當金の 일정 비율(10/100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追加로 計上하여야 한다'고 하여 부채로 計上토록 하고 있다.

한편, 法人稅法에 의하면 內國法人이 사용인의 退職給與에 充당하기 위한 退職給與充當金の 計上은 자의에 의하나 損金認定限度를 정하여 전액 損金으로 인정

63) 李相奉, 前掲論文, p.121.

하고 있지 않다.⁶⁴⁾

그리고 KICPA에서는 1974년 6월18일에 意見 第1號로 「退職給與充當金에 관한 會計處理」를 다음과 같이 공표하였다.

① 期末 現在 退職給與充當金으로 計上해야 할 金額은 決算日 現在 全 從業員이 退職할 時에 실제로 지급해야 할 金額(勤勞基準法 또는 기타 法令과 企業의 退職金給與 규정 중 가장 많은 金額)이다.

② 當期 歸屬分은 全額을 當期の 費用으로 計上하고 過去年度 歸屬分은 그 全額을 利益剩餘金의 감소로 計上한다.

③ 給與 規정의 개정과 給與의 인상으로 退職給與額이 인상되었을 경우에는 當期分과 過去年度分을 一括하여 當期 費用으로 計上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退職金 會計處理上의 問題點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企業會計基準에 의한 退職給與充當金の 설정액은 기업마다 다를 것이나 法人稅法의 規定에서 損金認定 限度額을 획일적으로 정하였으므로 결국 비용 計上이 동일하게 처리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방법으로 회계 처리하게 되면 부채를 완전하게 計上할 수 없고 과소 計上하게 된다. 즉, 순 이익이 적을 경우에는 퇴직 급여 총당금을 적게 계상하고 순 이익이 많을 경우는 퇴직 급여 총당금을 많이 계상하여 이익을 조정하는 이익 조작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⁶⁵⁾

64) 法人稅法 제13조

당해 사업년도에 損金에 산입할 수 있는 退職給與充當金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損金으로 인정하며,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損金不算入한다.

① 法人稅法 施行令 제18조 2항

1년간 계속하여 근무한 사용인에게 지급할 총 급여액의 1/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法人稅法 施行令 제18조 3항

퇴직급여총당금의 누계액이 그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할 퇴직급여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

65) 南相午; 「會計原理」, 茶山出版社, 1990, p.482.

따라서 회계의 기본 전제인 發生主義에 의한 적절한 회계 처리 및 공시가 요구된다.

둘째, 企業會計基準에서 「全 従業員의 一時退職 ……」은 사실상 기업의 영업 활동의 종료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회계 처리는 繼續企業의 가정에 위배된다.

셋째, 退職給與充當金(accrued severance indemnities)은 퇴직 급여에 대한 충당금으로 當該 사업 연도에 부담해야 할 퇴직금 상당액을 퇴직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 하였더라도 인위적으로 추산하여 이를 비용화 함으로서 社內에 유보시켜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퇴직자의 퇴직금에 대비하여 적립시키는 것이라하였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장래의 퇴직금 지급 보장을 확실히 하기 위해 社外 基金化하는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네째, 부채 계상에 있어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企業會計基準 제10조의 2에 의하면 長期負債는 現在價値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바, 당기 퇴직금에 관련된 부채는 장기 부채이므로 당연히 현재 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섯째, 기업 회계 기준 제47조 2항은 '퇴직 급여 충당금은 회계 연도말 현재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 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기말 要支給額의 계산 방식을 취함으로써 당기 퇴직금 지급액이 기말 요지금액에 포함되어 現金主義가 혼재되어 있다.

여섯째, KICPA意見 제1號의 ②, ③항에 대해 살펴보면 ②항의 過去年度 귀속분은 그 전액을 利益剩餘金의 감소로 계상한다는 점과 ③항의 규정은 SFAS NO.87과 비교하면 차이가 생긴다. 즉, 過去勤務原價는 현재와 장래의 일정 기간 걸쳐 배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연금 제도의 채택, 변경으로 인한 過去勤務原價는 종업원의 근속을 전제로 하여 발생될 것이라 기대되는 경제적 효익에 대한 報償이고, 과거 근무 원가를 인정하게 되면 장래의 受給金額이 증가하게 되므로 종업원의 過去勤務原價는 장래의 근무 기간에 걸쳐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2. 改善方向

공적 연금의 보장 수준은 어디까지나 최저 생계의 보장에 있다. 그러나 현실적

으로 국민의 보장 욕구의 향상, 연금 재정의 형편에 의해 공적 연금은 최저 보장 수준에 미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공적 연금은 기업 연금에 의한 보완이 필요하고 그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있다.⁶⁶⁾

우리나라 기업의 현행 퇴직금 제도는 퇴직 일시금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과 종업원이 퇴직시 지급해야 할 퇴직금의 재원을 필요시 운전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社內에 적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부담이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리고 노후 생활에 대한 확실한 보장책을 마련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한 사실이다. 따라서 退職金制度는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기금을 社外 적립함으로써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을 보장해주고, 종업원의 노후 생활에 대한 확실한 보장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금 제도와의 보완이 필요하므로 企業年金制度를 도입, 국민 연금 제도와 보완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퇴직금 제도의 대안으로 기업 연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① 미국의 ERISA, 일본의 「貸金支拂의 確保 等에 관한 法律」과 같이 퇴직금 지급 보장을 위한 特別法의 制定, ② 勤勞基準法, 所得稅法, 法人稅法 等の 改正을 통한 稅制上的 지원 대책의 마련, ③ 미국의 PBGC와 같은 지급 보증 기관의 설립, ④ 불입금과 수급 금액에 대하여 國民年金制度와의 調整을 통하여 노사간의 공동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退職金 會計處理上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지침의 마련을 통하여 退職金 會計處理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데 이는 곧 企業年金制度의 도입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現行 우리 나라의 퇴직 일시금 제도는 勤勞基準法, 法人稅法 等에 의해 강제되고 있어 합리적 기준에 의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기업 연금 회계 제도의 도입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發生主義에 基礎하고 繼續企業을 前提로하는 企業年金會計制度
- ② 給付確定型 年金制度를 中心으로 하는 社外基金年金制度
- ③ 年金會計 情報利用者에게 有用한 情報을 提供하기 위한 年金情報의 擴大公示

66) 申守植, “年金의 現況과 課題”, 「産經研究 第5號」, 韓國産業政策研究院, 1984, p. 97.

④ 保險數理的 基金積立方式 및 過去勤務原價에 대한 現在 및 未來 期間에의 合理的인 期間 配分을 위한 會計思考의 導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 要約 및 結論

1960年代 이후 經濟開發計劃을 수립하여 經濟發展에 역점을 둔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을 운영하여 온 결과 국민의 소득 수준은 상당히 향상되었다. 그러나 양적 성장에 치우친 나머지 福祉部門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취약하였으며, 더욱이 경제 발전 과정에서의 賃金 勞動者가 증가되었고, 의학 기술의 발달 및 영양 개선으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어 고령화 사회로 이행되어 가고 있어 퇴직 근로자의 노후 생활 보장등의 사회 위험에 대처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現在 우리나라에서는 特殊 職域의 年金制度와 1988년 1월1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國民年金制度가 있다. 그러나 국민 생활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으로 공적 연금 제도인 國民年金制度와 함께 私的 年金制度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며, 그 중에서도 현행 퇴직금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기업 연금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研究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退職給與充當金의 회계 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향후 企業年金制度가 도입, 실시될 것을 전제로 하여 企業年金制度의 실시 역사가 가장 오래되고 회계 처리에 대한 연구가 가장 발달된 미국의 연금 회계 기준인 SFAS NO.87을 중심으로 하여 기업 연금 회계 처리에 대한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 研究에서 정리된 事項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退職 給付는 사용자가 종업원들이 제공한 근로의 對價로 종업원에게 퇴직 소득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그 지급이 장래 퇴직시까지 지연되는 移延 賃金의 性格을 갖는다.

(2) 연금 급부는 미래에 발생할 사건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연금 회계에서 保險數理的假定과 기금적립방식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연금회계는 保險計理人에 의한 추정, 예측, 판단을 내포하고 있다.

(3) 年金原價는 勤務原價, 利子原價, 年金資産에 대한 實際 收益, 過去勤務原價의 償却額, 利得과 損失로 構成되며, 純期間年金原價의 單一金額으로 報告된

다.

(4) 純期間年金原價의 측정을 위한 방법으로 給付/勤務年數法의 단일한 방법의 사용을 요구한다.

(5) 退職 給付 지급을 위해 적립되는 기금 적립액은 年金負債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별개의 실체인 연금 제도에서 운용하므로 사용자의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6) B/S에 표시되는 負債와 註釋에서 공시하는 금액간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最小負債 概念을 도입, 제한적인 資本化方法을 채택한다.

(7) 자본 시장의 발달과 기업간 比較可能性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의 확대 공시를 요구한다.

(8) 현행 우리 나라 퇴직금 제도에 대해서는 ① 퇴직금 제도를 노사간의 협의를 거쳐 국민 연금 제도와의 조정을 통한 노사간의 공동 이익을 실현 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 발전시키고 ② 퇴직 일시금 제도를 순수한 연금 형태로 개선 하여야 한다.

(9) 퇴직금 회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세법 등의 개정을 통한 企業年金會計基準이 마련되어야 한다.

(10) 기업 연금 회계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發生主義와 繼續企業을 전제로 하는 確定給付型 年金制度의 도입, 保險數理的 基金積立方式 및 過去勤務原價에 대한 現在 및 未來期間에의 合理的 期間配分을 위한 會計思考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의 연구와 함께 會計目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임의적이고 불명확한 회계 처리 방법, 概念에 대한 精確한 解釋 및 情報公示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하겠고, 또한 현행 우리 나라의 退職金制度에 代案으로 국민 연금 제도와 기업 연금 제도와의 연계 및 보완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I. 國 內 文 獻

1. 具致謨；“企業年金會計에 관한 研究”，釜山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1988.
2. _____；“企業年金會計의 理論的 背景(I),(II)”，「保險調查月報」，韓國保險公社，1988.
3. 國民年金管理公團；「國民年金案内」，「國民年金管理公團」，1987.
4. 金然洙；“企業年金制度 導入時的 會計와 稅務에 관한 研究”，「木浦大學校 論文集」，第8輯，木浦大學校，1988.
5. 南相午；「財務會計理論」，서울，日新社，1986.
6. _____；「會計原理」，서울，茶山出版社，1990.
7. 閔載成, 朴宰用；「退職金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向」，韓國開發研究院，1984.
8. 朴晁洙；“韓國 企業退職金의 年金化方案에 관한 研究”，高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1985.
9. 邊禎周；「企業會計基準 解說」，서울，弘文館，1990.
10. 申建浩；“退職金制度의 改善方向에 관한 研究”，「產業研究」，第8集，1983.
11. 申守植；“年金의 現況과 課題”，「產經研究」，第5號，韓國產業政策研究院，1984.
12. 申瓊秀；「最新 稅務會計」，서울，租稅통람사，1989.
13. 李芳遠；「中級會計」，서울，博英社，1987.
14. 李相奉；“企業年金會計에 관한 研究”，「濟州大學校 論文集」，第29輯，濟州大學校，1989.
15. 李鍾寅；“企業年金會計에 관한 研究”，濟州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1988

16. 鄭鍾岩; 「中級會計」, 서울, 法文社, 1986.
17. 河在井; “企業年金의 會計處理에 관한 研究”, 京畿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8.

II. 外國文獻

1. AICPA; ARB NO.36, "Pension Plans-Accounting for Annuity Cost Based on Past Service", *AICPA*, 1948.
2. ____; ARB NO.47, "Accounting for Costs of Pension Plans", *AICPA*, 1956.
3. ____; APB Opinion NO.8, "Accounting for the Cost of Pension Plans", *AICPA*, 1966.
4. Dewhrist J. F.; "A Conceptual Approach to Pension Accounting", *Accounting Review*, Apr., 1971.
5. FASB; FASB Interpretation No.3, "Accounting for the Cost of Pension Plans Subject to the ERISA of 1974", *FASB*, 1974.
6. ____; SFAS NO.35, "Accounting and Reporting by Defined Benefit Pension Plans", *FASB*, 1980.
7. ____; SFAS NO.36, "Disclosure of Pension Plans", *FASB*, 1980.
8. ____; SFAS NO.87, "Employers' Accounting for Pensions", *FASB*, 1985.
9. ____; SFAS NO.88, "Employers' Accounting for Settlements and Curtailments of Defined Benefit Pension Plans for Termination Benefit", *FASB*, 1985.
10. IASC; IAS NO.19, "Accounting for Retirements Benefits in the Financial Statements of Employers'", *IASC*, 1983.
11. Kieso D. E., Weygandt J. J.; *Intermediate Accounting*, 5th ed., John Wiley & Sons Inc., 1986.
12. Miller B. W. Paul ; "the New Pension Accounting (Part I)", *Journal of Accountancy*, Jan., 1987.

13. _____; "the New Pension Accounting (Part II)", *Journal of Accountancy*, Feb., 1987.
14. Stone M., Ingran R. W.; "the Effect of Statement No.87 on the Financial Report of Early Adopters", *Accounting Horizons*, Sep., 1988.
15. the Encyclopedia Americana Vol.21, *Americana Corporation*, 1976.
16. Wolk H.I., Francis J.R., Tearney M.G; *Accounting Theory*, Kent Publishing Co., 1984.



Summary

A study on Measurement and Disclosure for the Cost of Pension Plans

Kang Man-Soon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Today the term "Pension" is generally applied to any periodic retirement income benefit. Private pension plan is an arrangement whereby an employer provides regular income payments (benefits) to retired employees meeting the conditions set forth in the plan.

Because our current severance pay is not enough to guarantee to make one's old age comfortabl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rite pension plan.

The central accounting question for pensions is concerned with recognition, mesurement and reporting of pension cost and related liability for the sponsoring company.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a) how pension cost should be mesured and disclosed, which centers on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FASB Statement No.87 "Employers'Accounting for Pensions" b) analizing and improving the problems of accounting for allowance for severance pay in this contry.

From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pension accounting and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ing:

1. A pension benefit is a type of deferred compensation offered by the employer in exchange for the service rendered by employee.

2. Actuarial assumptions and methods are essential part of accounting for pensions because pension benefits are inherently future events. Therefore pension accounting depends upon estimates, predictions and judgements of acturaries.

3. The periodic pension cost should be recognized as a single sum for a period. The net periodic pension cost consists of five components such as service cost, interest cost, actual return on pension assets, amortization of unrecognized prior service cost, gains and losses.

4. The method for measurement of the net periodic pension cost should be based on benefits/years-of service approach. It is an important change in pension accounting. APB Opinion No.8 has been based on revenue-expense approach to recognize accrued yearly pension expense, but SFAS No.87 determined that retirement benefit should be recognized as an accounting liability. Therefore, pension cost is based on asset-liability approach.

5. The employer's contribution to pension is treated as accounting for the pension fund.

6. It is used a compromise approach that required immediate recognition of a liability (referred to as the minimum liability) when the accumulated benefit obligation exceeds the fair value of pension assets.

7. Because of inherent complexities of pension it is required more descriptive information for users of financial reports to assess the status of employer's pension arrangement and its effects on the employer's financial position and results of operation.

8. Policy's direction is to improve and change current severance pay system as private pension plan, by coordinating private pension plan and public pension plan.

9. Financial standard for pension accounting should be developed through the revision of related law.

10. We should consider accepting a defined benefit plan based on accrual basis and going concern, and accounting thought for rational allocation of actuarial funding methods and prior service cost.